

●산림청고시 제2022-124호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림청장

2023년도 1만 m²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 경사도 10도 미만 : 75,904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23,163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294,114천원
 - 경사도 30도 이상 : 383,75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 경사도 10도 미만 : 201,374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387,694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505,506천원
 - 경사도 30도 이상 : 618,683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단서, 제39조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하는 경우(재해예방시설 설치, 특수공법 녹화, 시설물 철거, 되메우기, 생태복원 비용 등)에는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